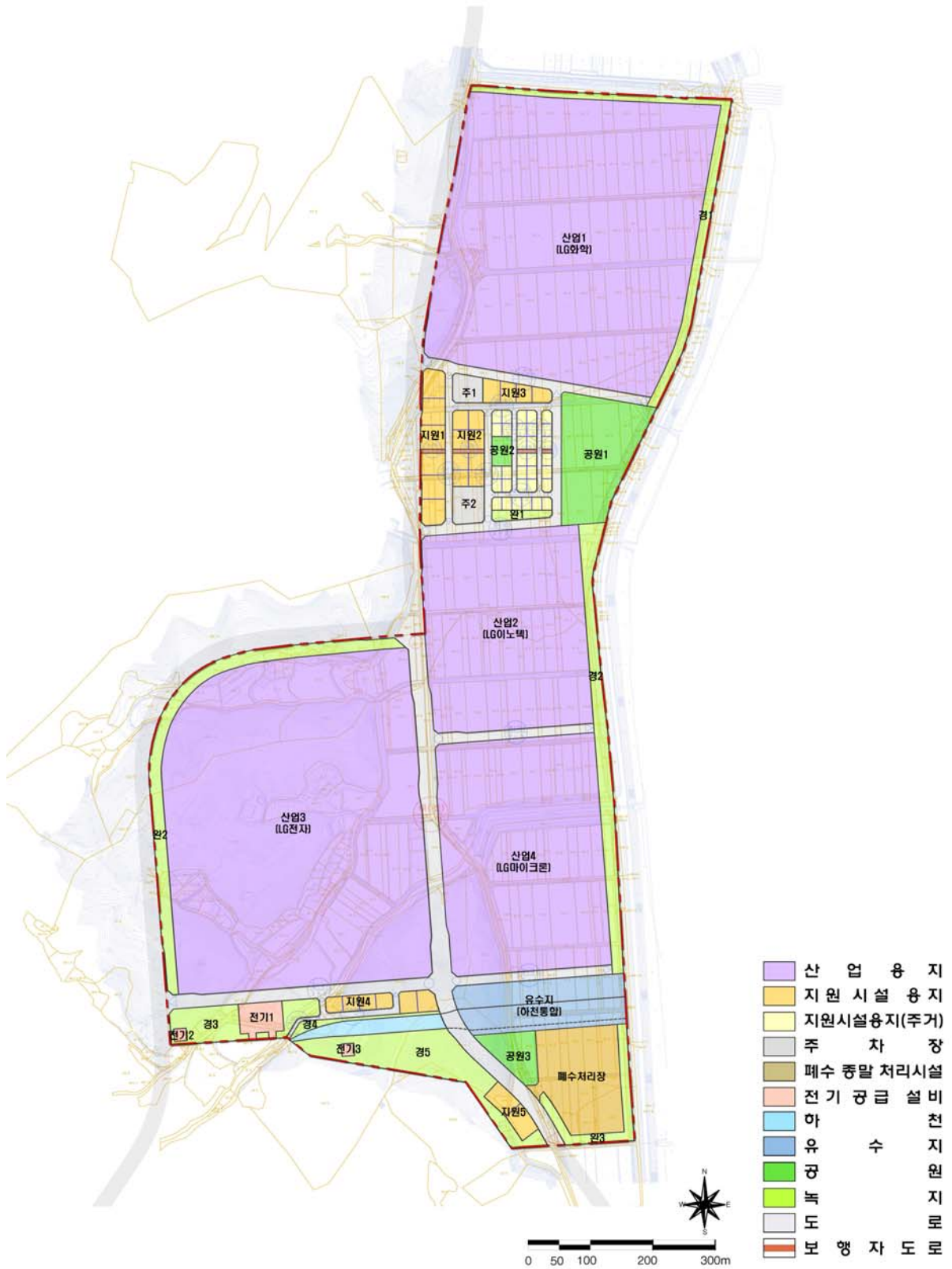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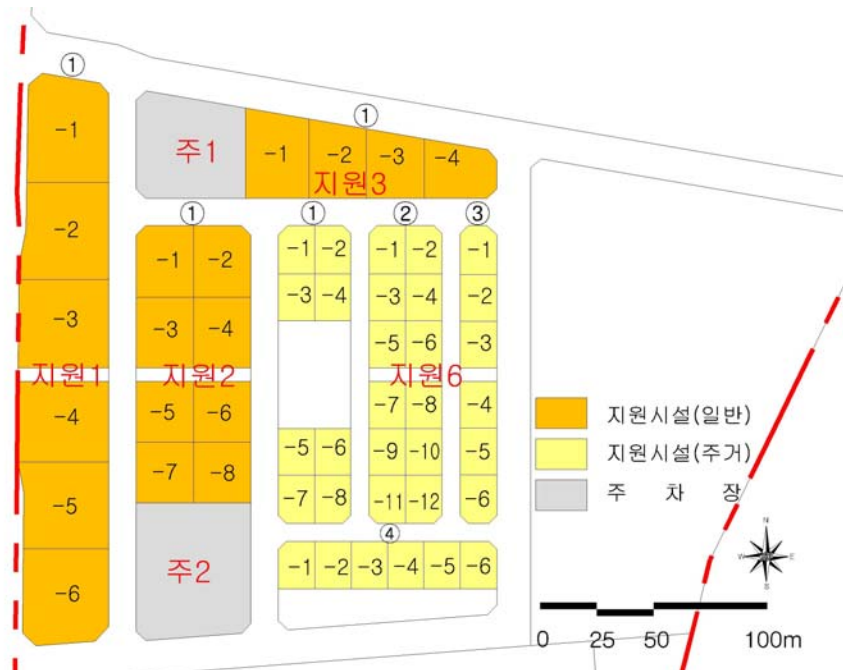


【과주월릉첨단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】



【파주월릉첨단산업단지 이주자택지 확대도면】



건축물 용도

지원6	허용용도	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(1) 단독주택(1필지당 세대수는 3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.) (2) 제1·2종근린생활시설(단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하며,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은 실내골프연습장에 한한다) (3)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※ 근린생활시설 및 아동관련시설은 지하층, 1층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며,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의 40%범위내에서 허용한다.
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밀 도	건폐율 60%, 용적률 200%이하
	높 이	4층 이하

-

+ -

주)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

건축물외의 용도

구 분	내 용
대지내 차량출입	-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교통영향평가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-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. -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.(단 산업용 지중 도로변에 50m이상 접하거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점포용주택이 입지할 경우에는 차량출입구를 2개소 이상 둘 수 있다) -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.
부설주차장의 설치	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파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부설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	- 부설주차장은 가급적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직각주차이어야 한다. 이때 해당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. -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미터 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. -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
대지안의 조경	- 면적 200㎡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- 연면적이 2,000㎡ 이상 : 대지면적의 15%이상 - 연면적이 1,000㎡~2,000㎡미만 : 대지면적의 10%이상 - 연면적이 1,000㎡미만 : 대지면적의 5%이상 -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,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.
장애인을 위한 계획	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.
차량출입구	교통영향평가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,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일조권 확보 (지원4)	- 이주자택지내(지원4)에서의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 - 높이 4m 이하 :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

	- 높이 8m 이하 :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- 높이 8m 초과부분 :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/2이상
--	---